〈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6.02)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코드: 58646)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투자전략

▪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1.50	0.72	1.38	1.503	252	412	580	942	2,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없음	2.275	1.495	1.59	2.275	233	451	651	1,047	2,1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14	0.36	1.05	1.140	166	288	416	692	1,5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575	0.795	1.18	1.577	162	331	510	893	2,03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C1은 이연판매보수(CDSC)제도가 적용되어 최초매입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종류 C5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95%에서 0.8%로 변경됩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2023/07/21~ 2024/07/20	최근2년 2022/07/21 ~ 2024/07/20	최근3년 2021/07/21 ~ 2024/07/20	최근5년 2019/07/21 ~ 2024/07/20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5.16	7.64	8.66	-2.49	8.63	5.33
비교지수	2006.7.21	7.36	8.03	-4.31	5.82	3.38
수익률변동성	2006.7.21	13.20	14.20	14.31	18.97	18.78

(주1) 비교지수 : KOSPI*95% + Call *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_가치중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42	3,628	2.80	7.26	3.36	8.56	10년 1개월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	-			3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6개, 운용 규모는 719억 입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table>
<tr><td></td><td>▪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th></tr>
<tr><td>원금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td><td>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방법</td><td>▪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 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퇴직연금 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입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종류 C5수익증권으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95%에서 0.8%로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td></tr>
</table>

<table>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5.06.05</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B)</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8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7">기타</td><td>보수체감(CDSC)</td><td>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tr>
<tr><td>고액, 전문투자자 등(I)</td><td>고액거래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펀드, 랩(F)</td><td>펀드가 투자 또는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주택마련(H)</td><td>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